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용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9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권순선, 권영희,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혜련, 문영민, 박순규,
양민규, 이동현, 이세열,
전병주, 최 선, 한기영,
황인구 의원(16명)

1.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차.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 추진 및 녹색제품 관련 정보 공유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등의 업무평가 반영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의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한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51800000008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용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18.

회신일 : 2021.05.24.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에 따라 비용 발생
-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천원으로 연평균 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2021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예산(2억원)을 준용하여 비용을 추계함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 총비용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 1,0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구분	-	-	-	-	-	-	-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안제12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총비용(b-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1,0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200,000천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에서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소비 활동 추진을 위하여 2021년에 설치한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예산 2 억원을 준용하여 비용을 산출함

과목구분	2021년 예산내역
민간위탁금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 200,000천원

출처 : 2021년 예산 사업설명서(기후환경본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무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l@seoul.go.kr